

파주운정3지구 A42블록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사후무순위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품목을 승계하는 조건인바, 청약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941-6002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2차)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2.02.25.(금)	2025.07.21.(월)	2025.07.28.(월)	2025.07.31.(목)	2025.08.07.(목)~08.09.(토)	2025.08.12.(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순위 청약 가능 대상자

-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일 주택(신영지웰 운정신도시)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일 주택(신영지웰 운정신도시)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21.(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11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2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07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2차)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7.28.(월)	2025.07.31.(목)	2025.08.07.(목)~08.09.(토)	2025.08.12.(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아파트 입주증발급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110,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경로당 1층)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110번지(파주운정3지구 A42BL 공동주택용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20층 7개동 총 606세대 중 잔여 3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잔금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1115	01	084.9908A	84A	2	404	0404
					405	1803
	02	100.9448A	100A	1	404	1401
					합 계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호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2025.11.12.(수)
084.9908A	84A	404	0404	1	206,482,288	234,517,712	-	441,000,000	88,200,000	352,800,000
		405	1803	1	211,632,640	240,367,360	-	452,000,000	90,400,000	361,600,000
100.9448A	100A	404	1401	1	236,512,346	268,625,140	26,862,514	532,000,000	106,400,000	425,600,000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 요건에 따릅니다.(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 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 부담)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2025.11.12.(수)	
084.9908A	9,998,000	999,800	8,998,200	-
100.9448A	11,561,000	1,156,100	10,404,900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동	호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2025.11.12.(수)
084.9908A	404	0404	-			-	-	-
			합 계			-	-	-
	405	1803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LG전자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600,000	5,400,000
합 계			6,000,000	600,000	5,400,000			
100.9448A	404	140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LG전자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7,000,000	700,000	6,300,000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면 마감		2,880,000	288,000	2,592,000
			클린케어룸	복도팬트리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수납가구특화	드레스룸 2개소 (침실2, 3)		3,120,000	312,000	2,808,000
				드레스룸 (침실1)		1,980,000	198,000	1,782,000
			합 계			15,980,000	1,598,000	14,382,000

※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추가선택품목의 변경 및 신규 계약은 불가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아파트 공급금액	우리은행	1005-204-264617	주식회사 신영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1005-504-274283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1005-804-281586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각각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 단. 계약금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2차)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2차)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31.(목) ~ 2025.08.09.(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7.3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체결 일시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8.12.(화) 10:00~16:00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아파트 입주증발급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110,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경로당 1층)	031-941-6002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21.(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발급분에 한함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발급)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출입국사실증명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추가 개별통지 서류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증명서)	인지세 납부 증명서 - 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 인지세 15만원 중 50% 계약자 부담)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및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납부 및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시 소인처리 하여야하며, 이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인지세법」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제47조의4조 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건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 본 주택은 2024.11 준공이 완료되어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주)신영	(주)신영씨앤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14층 140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에이동 257-1호
법인등록번호	110111-0618178	110111-0101909

■ 본 무순위(사후2차)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g-well.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위치 :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아파트 입주증 발급처(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110,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경로당 1층)

■ 분양 문의 : 031-941-6002